|  |  |  |
| --- | --- | --- |
| **중국보감회**  **《보험회사 인수합병 관리방법》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보감발[2014]26호  각 보감국, 각 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공사 :  보험회사 인수·합병 행위를 규범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및 그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시장 질서와 사회공공 이익을 수호하고 보험시장 자원 최적화 안배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보감회가 <보험회사 인수합병 관리방법>을 제정하였기에 지금 인쇄, 배포하니 이를 준수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보감회  2014년 3월 21일  **보험회사 인수합병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보험회사 인수합병 행위를 규범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및 그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시장 질서와 사회공공 이익을 수호하고 보험시장 자원의 최적화 안배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하 <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의 보험회사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감회)의 비준, 설립을 거쳤으며 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집단(지주)회사, 보험회사, 재보험회사를 지칭한다. 　  **제3조** 보험회사 인수합병은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의 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보험소비자 합법권익에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고 국가금융안전과 사회공공이익을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4조** 보험회사 인수합병이 업종 진입, 경영자 집중 신고, 국유지분 양도 등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관련부문의 비준을 거쳐야 할 경우에는 비준을 거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회사 인수합병의 유관 각 측은 중국보감회에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기재, 잘못된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보험회사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고, 열심히 책임을 지며 보험회사 자산 안전을 지킴으로써 보험회사와 전체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7조** 회계사사무소, 전업평가기구, 변호사사무소 등 전업 중개서비스기구는 보험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책임을7 다하여 업종규범과 직업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인 수**  **제8조** 본 방법에서의 인수는 인수자가 일시적 또는 누적으로 보험회사의 1/3 이상(1/3을 포함하지 않음)의 지분을 취득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인수자가 일시적 또는 누적으로 보험회사 1/3의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였지만 해당 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어 보험회사 통제를 실현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인수자는 투자자 및 그 관련 측, 그와 행동을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9조** 보험회사 인수는 피인수 보험회사가 중국보감회에 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다.  (1) 인수신청서;  (2) 총체적인 인수방안 - 사업타당성 분석, 거래구조, 실시보조, 자금출처, 지불방식, 후속안배 포함;  (3) 거래가격 및 가격결정 근거 설명 - 국유지분양도와 관련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평가보고, 주관기구의 지분양도 동의 또는 투자 증명자료, 공개입찰 양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투자인 및 그 관련자, 행동을 같이 하는 자가 해당 인수에 참여한 상황;  (5) 경영자집중 신고 설명 또는 유관 비준문건;  (6) 전문 중개서비스 기구가 발급한 의견서;  (7) 지분인수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지분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인이 새로 늘어난 주주일 경우에는 <보험회사 지분관리방법> 제28조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이하<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제9조 규정의 유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증액지분구매방식을 취할 경우 <보험회사 지분관리방법>제29조 또는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제9조 규정의 유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중국보감회가 건전성 감독관리 원칙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자료.  **제10조** 피인수보험회사가 인수에 대하여 내린 의사결정 및 채택한 조치는 보험회사 및 그 주주이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여야 하고 보험회사 자원을 사용하여 인수자에게 어떠한 형식의 재무보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지분양도계약서, 출자계약서 또는 지분인수계약서를 체결부터 관련 지분 또는 주식 명의이전 완성까지의 기간을 인수과도기로 한다. 인수과도기 내에 엄중한 재정곤란에 처한 보험회사를 구제하기 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인수자가 보험회사 동사회 개편을 제의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인수보험회사는 중대한 영향이 있는 자산 투자, 구매와 판매행위를 진행하거나 인수자 및 관련자와 거래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리스크 처리 또는 동일한 통제인이 통제하는 다른 주체 간의 양도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인수자가 인수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보유한 피인수보험회사 지분 또는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서면 약속을 하여야 한다.  **제3장 합 병**  **제13조** 본 방법에서의 합병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하나의 보험회사로 합병하는 것을 지칭한다. 보험회사 합병은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을 취할 수 있으나 <보험법> 제95조의 분업경영 유관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보험회사 합병은 합병하려는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중국보감회에 신청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신청서;  (2) 합병 각 측 주주회의, 주주총회 또는 동사회 결의서;  (3) 합병계약서;  (4) 총체적인 합병방안 - 보험소비자권익보호 안배, 채권채무 안배, 자산분배와 자산처분계획, 업무범위 조정설명, 분사의 정합방안, 현재 고급관리인원과 임명될 고급관리인원의 이력, 직원안치계획을 포함;  (5) 경영자집중 신고 설명 또는 유관 비준문건;  (6) 전업 중개서비스기구가 발급한 의견서;  (7) 중국보감회가 건전성관리감독의 원칙에 근거하여 제출을 요구한 기타자료.  **제15조** 합병 각 측은 중국보감회 비준을 취득 날로부터 10일 내에 재권자와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며 30일 내에 신문에 공고한다.  **제16조** 합병 각 측의 채권채무와 보증책임은 존속 보험회사 또는 신설 보험회사가 승계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험회사 합병 후의 업무법위는 중국보감회가 유관규정에 따라 재 심사, 비준한다.  중국보감회의 심사, 비준을 거친 후 업무범위가 합병 각 측의 업무범위보다 작은 경우에는 합병 각 측이 중국보감회 비준을 취득한 후의 6개월 이내에 관련 업무를 자질에 부합하는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18조** 합병 각 측의 기존 지사는 존속 보험회사 또는 신설 보험회사가 승계한다. 보험회사가 합병 후 중국보감회 파출기구가 있는 동일한 구역 내 지사의 양은 <보험회사 분지기구 시장진입관리방법>의 유관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9조** 중국보감회는 보험회사 인수합병을 법에 따라 감독한다.  **제20조** 중국보감회가 보험회사 인수합병 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주로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존속 보험회사 또는 신설 보험회사 경영 지속성에 대한 영향 -지불능력상황, 재무상황, 관리능력을 포함한다.  (2) 보험업종에 대한 영향 - 보험시장의 공평경쟁, 보험업종의 경쟁능력, 보험회사의 리스크 처리를 포함한다.  (3) 보험소비자 합법적 권익 - 국가 금융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에 대한 영향.  **제21조** 중국보감회 비준을 거쳐 인수자가 인수를 마친 후 2개의 동종 업무를 경영하는 보험회사를 통제할 수 있다.  **제22조** 보험회사가 매 분기 전 30일 내에 전기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투자, 구매 또는 판매자산, 관련거래, 업무양도, 보험소비자 고지, 사회공고, 고급관리인원 변경, 직원안배 등 상황을 보험회사가 인수합병을 마친 후 1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보험회사 인수합병 의 유관 각 측은 규정에 따라 보고, 공고,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 공고 등 문건에 허위기재, 잘못 된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을 때 중국보감회가 개정할 것을 명령할 권력이 있으며 감독담화 채택, 감독서신 발행, 일시 정지 또는 인수합병 활동정지 등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보험회사 인수합병의 유관 각 측이 중국보감회에 실제 통제자 상황 및 관련관계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타인 대신 지분을 지니는 행위가 있고, 인수합병 행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에는 중국보감회가 그 주주권리를 제한, 양도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 보험회사 인수합병의 유관 각 측이 위법행위 또는 신용을 잃은 행위가 존재할 때에는 중국보감회가 신용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보험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한다.  전문 중개서비스 기구가 보험회사 인수합병 절차의 합법성과 자산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때에는 중국보감회가 신용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보험회사 인수합병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한다.  **제26조** 보험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중국보감회는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공상행정관리와 세무관리부문과 소통을 조화롭게 진행하여 신고정보의 완정성,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제5장 부 칙**  **제27조**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기 전 12개월 이내에 관련관계가 있었다면 관련 측으로 본다.  **제28조** 2개 또는 그 이상의 투자자가 동일한 보험회사에 투자하여 주주로 된 시간 간격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상반되는 증거가 없으면 행동을 같이 하는 자로 본다.  **제29조** 중국보감회 비준을 거친 보험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는 <중국보감회 <보험회사지분 관리방법> 제4조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 제2조 투자보험회사 연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제30조** 중국보감회 비준을 거친 보험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합병 대출융자방식을 취할 수 있다. 단 규모는 화페대가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31조** 보험회사가 중대한 리스크가 존재하여 사회공공이익과 금융 안정에 엄중한 위협이 있을 때 중국보감회가 유관부문과 협상하고 국무원에 신청하여 비준을 거친 후 중국보험보장기금유한책임공사가 보험회사 인수합병에 참여할 수 있다.  **제32조** 외국투자자가 중국경내에서 보험회사 인수합병을 진행하여 인수합병을 완료한 후 외자주주 출자 또는 주주보유 비율이 보험회사 등록자본의 25%를 초과할 때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 제8조의 관련 자질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3조** 보험자산관리공사, 보험상조 조직의 인수합병 활동은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4조** 본 방법은 중국보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5조** 본 방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国保监会**  **关于印发《保险公司收购合并管理办法》的通知**  保监发〔2014〕26号  各保监局，各保险公司、保险资产管理公司：  　　为了规范保险公司收购合并行为，保护保险消费者、保险公司及其股东的合法权益，维护保险市场秩序和社会公共利益，促进保险市场资源的优化配置，根据《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及相关法律、行政法规，我会制定了《保险公司收购合并管理办法》，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中国保监会  　 2014年3月21日  **保险公司收购合并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保险公司收购合并行为，保护保险消费者、保险公司及其股东的合法权益，维护保险市场秩序和社会公共利益，促进保险市场资源的优化配置，根据《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以下简称《保险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及相关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保险公司，是指经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以下简称中国保监会）批准设立，并依法注册的保险集团（控股）公司、保险公司、再保险公司。  **第三条** 保险公司收购合并必须遵守法律、行政法规及中国保监会的规定，不得损害保险消费者的合法权益，不得危害国家金融安全和社会公共利益。  **第四条** 保险公司收购合并涉及行业准入、经营者集中申报、国有股权转让等事项，需要取得国家相关部门批准的，应当在取得批准后进行。  **第五条** 保险公司收购合并的有关各方必须向中国保监会提供真实、准确、完整的信息，不得有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者重大遗漏。  **第六条** 保险公司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在收购合并活动中应当诚实守信、勤勉尽责，维护保险公司资产的安全，保护保险公司和全体股东的合法权益。  **第七条** 会计师事务所、专业评估机构、律师事务所等专业中介服务机构在保险公司收购合并中应当勤勉尽责，遵守行业规范和职业道德。  **第二章 收 购**  **第八条** 本办法所称收购是指收购人一次或累计取得保险公司三分之一以上（不含三分之一）股权，且成为该保险公司第一大股东的行为；或者收购人一次或累计取得保险公司股权虽不足三分之一，但成为该保险公司第一大股东，且对保险公司实现控制的行为。  　　收购人包括投资人及其关联方、一致行动人。  **第九条** 保险公司收购应由被收购保险公司向中国保监会提出申请，并提交以下材料：  　　（一）收购申请书；  　　（二）收购整体方案，包括可行性研究、交易结构、实施步骤、资金来源、支付方式、后续安排；  　　（三）交易价格及定价依据说明，如涉及国有股权转让还应当按照相关规定提交资产评估报告、主管机构同意其转让或投资的证明材料、公开挂牌转让的证明材料；  　　（四）投资人及其关联方、一致行动人参与本次收购的情况；  　　（五）经营者集中申报说明或有关批准文件；  　　（六）专业中介服务机构出具的意见；  　　（七）采取受让股权方式的，应当提交股权转让协议，受让方为新增股东的，还应当提交《保险公司股权管理办法》第二十八条或《中华人民共和国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以下简称《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第九条规定的有关材料；  　　（八）采取认购增发股权方式的，应当提交《保险公司股权管理办法》第二十九条或《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第九条规定的有关材料；  　　（九）中国保监会根据审慎监管原则要求提供的其他材料。  **第十条** 被收购保险公司针对收购所做出的决策及采取的措施，应当有利于维护保险公司及其股东的利益，不得利用保险公司资源向收购人提供任何形式的财务资助。  **第十一条** 自签订股权转让协议、出资协议书或股份认购协议起至相关股权或股份完成过户的期间为收购过渡期。在收购过渡期内，除为挽救面临严重财务困难的保险公司外，收购人不得提议改选保险公司董事会，被收购保险公司不得进行有重大影响的投资、购买和出售资产行为，或者与收购人及其关联方进行交易。  **第十二条** 除风险处置或同一控制人控制的不同主体之间的转让等特殊情形外，收购人应书面承诺自收购完成之日起三年内，不转让所持有的被收购保险公司股权或股份。  **第三章 合 并**  **第十三条** 本办法所称合并是指两家或两家以上保险公司合并为一家保险公司。保险公司合并可以采取吸收合并或者新设合并，但不得违反《保险法》第九十五条关于分业经营的有关规定。  **第十四条** 保险公司合并应由拟合并的保险公司共同向中国保监会提出申请，并提交以下材料：  　　（一）合并申请书；  　　（二）合并各方的股东会、股东大会或董事会决议；  　　（三）合并协议；  　　（四）合并整体方案，包括保险消费者权益保护安排、债权债务安排、资产分配和资产处分计划、业务范围调整说明、分支机构整合方案、现任和拟任高级管理人员简历、员工安置计划；  　　（五）经营者集中申报说明或有关批准文件；  　　（六）专业中介服务机构出具的意见；  　　（七）中国保监会根据审慎监管原则要求提供的其他材料。  **第十五条** 合并各方应当自取得中国保监会批准之日起十日内通知债权人和投保人、被保险人或者受益人，三十日内在报纸上公告。  **第十六条** 合并各方的债权债务和保单责任应当由存续保险公司或者新设保险公司承继。  **第十七条** 保险公司合并后的业务范围由中国保监会按照有关规定重新核准。  　　经中国保监会核准后的业务范围小于合并各方业务范围的，合并各方应当自取得中国保监会批准后的六个月内将相关业务转让给符合资质的保险公司。  **第十八条** 合并各方原有分支机构由存续保险公司或者新设保险公司承继。保险公司合并后，在中国保监会派出机构同一辖区内的分支机构数量，应当符合《保险公司分支机构市场准入管理办法》的有关规定。  **第四章 监督管理**  **第十九条** 中国保监会依法对保险公司收购合并进行监管。  **第二十条** 中国保监会在审核保险公司收购合并申请时，主要考虑以下因素：  　　（一）对存续保险公司或新设保险公司经营持续性的影响，包括偿付能力状况、财务状况、管理能力；  　　（二）对保险行业的影响，包括保险市场公平竞争、保险行业竞争能力、保险公司风险处置；  　　（三）对保险消费者合法权益、国家金融安全和社会公共利益的影响。  **第二十一条** 经中国保监会批准，收购人在收购完成后可以控制两个经营同类业务的保险公司。  **第二十二条** 在保险公司收购合并完成后十二个月内，保险公司应当于每季度前三十日内，将上一季度有重大影响的投资、购买或者出售资产、关联交易、业务转让、保险消费者告知、社会公告、高级管理人员变更、员工安置等情况书面报告中国保监会。  **第二十三条** 保险公司收购合并的有关各方未按照规定履行报告、公告、告知义务或者在报告、公告等文件中有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者重大遗漏的，中国保监会有权责令改正，并采取监管谈话、出具监管函、责令暂停或者停止收购合并活动等监管措施。  **第二十四条** 保险公司收购合并的有关各方未如实向中国保监会申报实际控制人情况及关联关系，或存在为他人代持股权行为，且对收购合并行为构成重大影响的，中国保监会可以采取限制其股东权利、责令转让等措施。  **第二十五条** 对保险公司收购合并的有关各方存在违法行为或失信行为的，中国保监会可以设立诚信档案，并限制其在三年内投资保险公司。  　　对专业中介服务机构未能如实反映保险公司收购合并程序合法性和资产状况的，中国保监会可以设立诚信档案，并限制其在三年内参与保险公司收购合并。  **第二十六条** 在保险公司收购合并过程中，中国保监会可以与商务部、中国人民银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以及工商行政管理和税务管理部门进行沟通协调，对申报信息的完整性、真实性和准确性进行核查。  **第五章 附 则**  **第二十七条** 自签订收购合并协议起之前十二个月内，曾经具有关联关系情形的视同关联方。  **第二十八条** 两家或以上投资人投资入股同一家保险公司，时间间隔不超过三个月的，如无相反证据，则视为一致行动人。  **第二十九条** 经中国保监会批准，保险公司收购合并活动中的投资人可不适用《中国保监会关于<保险公司股权管理办法>第四条有关问题的通知》第二条关于投资保险公司年限的规定。  **第三十条** 经中国保监会批准，保险公司收购合并活动中的投资人可采取并购贷款等融资方式，但规模不能超过货币对价总额的50%。  **第三十一条** 当保险公司存在重大风险，可能严重危及社会公共利益和金融稳定时，由中国保监会经商有关部门，并报国务院批准后，中国保险保障基金有限责任公司可以参与保险公司收购合并。  **第三十二条** 外国投资人在中国境内进行保险公司收购合并活动，在收购合并完成后外资股东出资或者持股比例占保险公司注册资本超过25%的,应当符合《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第八条的相关资质规定。  **第三十三条** 保险资产管理公司、保险互助组织的收购合并活动参照本办法执行。  **第三十四条** 本办法由中国保监会负责解释。  **第三十五条** 本办法自2014年6月1日起施行。 |